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육미선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9년 7월 1일
- 회부일자 : 2019년 7월 3일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및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의를 포함(안 제2조).
- 나. 여성 권익과 지위향상 부진 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다.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 라.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마.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을 확대함(안 제12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강근)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5조는,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성별영향평가의 부진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등 파악 → 성별영향평가 실시 → 행정·재정적 지원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의 범위 내에서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시,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직접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3항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2조에서는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에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이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제2항에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시행의 궁극적 목적이 성인지 예산에의 반영을 통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조항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9조는 “도민의 참여조성”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도민 모니터링 및 제안제도 활용 등을 통해 충청북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이 적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도민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지속가능한 민·관 협조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 및 효과적 추진을 위해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절차 상 조례안 예고와 해당 집행부 협의를 거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